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7호, 2024. 12.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I.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구분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회사,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서울	2,759,464	2,648,152	2,845,787	2,231,668	2,273,771	2,806,526	2,552,779	2,271,983	2,485,424	2,122,143	2,615,781
부산	2,875,517	2,457,114	2,994,983	2,147,432	2,152,267	2,725,725	2,241,097	2,289,955	2,342,506	2,207,921	2,349,308
대구	2,647,252	2,377,433	2,308,331	2,132,925	2,295,657	2,438,966	2,216,632	2,198,921	2,317,102	2,135,324	2,280,504
인천	2,935,640	2,423,921	2,706,772	2,155,720	2,406,005	2,907,032	2,383,915	2,209,314	2,409,076	2,687,480	2,258,845
광주	3,114,054	2,481,707	2,807,789	2,134,951	2,295,721	2,439,521	2,999,404	2,226,971	2,352,643	2,216,754	2,456,093
대전	2,896,756	2,376,039	2,467,425	2,110,244	2,182,097	2,571,332	2,516,547	2,124,354	2,423,455	2,096,270	2,582,068
울산	3,265,888	2,473,059	2,720,043	2,145,450	2,634,481	2,884,071	2,315,283	2,182,643	2,199,120	2,168,290	2,249,430
경기	3,069,794	2,554,351	2,431,424	2,171,271	2,355,873	2,830,901	2,407,796	2,224,322	2,336,726	2,385,335	2,561,857
강원	2,808,578	2,218,015	2,384,193	2,192,895	2,237,046	2,651,703	2,666,351	2,233,584	2,387,432	2,201,402	2,405,425
충북	3,510,375	2,356,245	2,345,137	2,151,590	2,404,668	2,679,707	2,522,639	2,246,186	2,370,034	2,333,922	2,392,727
충남	3,376,421	2,391,840	2,629,585	2,143,378	2,461,092	2,967,179	2,475,307	2,251,211	2,320,347	2,132,488	2,337,883
전북	3,053,388	2,265,543	2,590,538	2,137,136	2,145,230	2,403,741	2,313,383	2,241,392	2,469,308	2,096,270	2,433,130
전남	3,026,602	2,273,011	2,391,599	2,145,594	2,444,419	2,614,559	2,212,428	2,565,147	2,443,541	2,145,230	2,433,993
경북	3,084,220	2,325,416	2,226,484	2,172,492	2,209,908	2,605,832	2,378,320	2,164,160	2,351,072	2,242,779	2,359,166
경남	3,226,327	2,394,968	2,409,061	2,108,137	2,224,489	2,796,005	2,744,699	2,133,017	2,306,917	2,139,048	2,466,462
제주	2,714,544	2,206,026	2,839,238	2,304,898	2,096,270	2,874,013	2,259,659	2,398,101	2,314,215	2,167,262	2,367,270
세종	2,599,712	2,264,310	2,250,457	2,097,833	2,139,048	2,307,553	2,324,139	2,392,293	2,101,575	2,112,315	2,328,085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산 업 분 류	기준보수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2,630,071
	3,087,731
	2,572,449
	2,872,215
	4,806,267
	2,962,788
	2,703,374
	2,756,776
	2,096,270
U. 국제 및 외국기관	3,579,524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